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8
----------	-----

2025. 6. 11.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2025. 5. 30. 강남구청장(총무과)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부 신청자격 완화(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를 통해 신규 공무원 또한 대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 생활 안정 및 기금 관리·운용에 공공성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추가
- 나.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함(안 제10조)
 -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다. 대부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신규 공무원 또한 생활안정기금 대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증진함(안 제12조)
 -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
- 라. 단순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기금전출금 7억원)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기금 내부거래 반영)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리(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제3호 그 밖의 수입

금에 관하여 현재까지 해당 호로 수입금이 발생한 사항이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삭제 검토 해 볼 수 있음.

- 안 제4~5조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4조제1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는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가 명확할 것으로 보임.

제2호 ‘공무원’에 관하여는 현재의 약칭은 제5조제2항에서 하고 있으나, 약칭이란 자치법규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므로, ‘구 소속 공무원’의 약칭에 관한 위치를 제4조(공무원 생활안정기금으로 수정하는 경우 1호, 그렇지 않다면 제2호에 규정)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한 바,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강남구청장)에게 주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규칙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지를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로 승격을 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정조례안 제5조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규정한다면 근거법령을 인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 제6조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법제처

2. 기금출납원 :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 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설명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 제7조는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는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정확한 위원의 숫자가 불분명한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통상 위원회의 경우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규정하는 점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추가적인 사항으로 강남구의회의원 또는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제4항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규정함에 따라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4

항에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로 규정함에 따라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가 할 것인지 위원장이 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므로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원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척·기피·회피를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의 제목을 ‘위원회 운영’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 제11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는 대부 신청자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신규 공무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저연차(6개월) 공무원이 대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부 신청자격을 완화한 사항임.
- 안 제13조는 대부금액과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대부금 일시상환에 관한 규정으로, 대부금액과 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로 규정하고 있는바, 1호에서 3호는 각 호의 내용이 해당 호의 필수요건이나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일시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규정의 명확성과 대상 공무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2호의 경우는 허위사실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사실상 취소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바, 조항의 제목을 ‘대부금 일시상환 및 취소’ 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3호의 대부금 상환의 연체자에 대한 일시상환은 연체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고 상환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현실적으로 대부금액이 적음에도 3회를 연체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일시상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오히려 대부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여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 숙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5조는 대부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제3항은 수탁금융기관과 구청장 간의 대부업무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약속을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에 가깝다고 할 것인바, 이는 대부업무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삭제를 고려해볼 수 있어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을 보임.

○ 안 제16조는 구청장의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으로 총 직원 현원(2025. 4. 1.자 기준) 확인 결과 1,962명이며,
 - 6개월 이상 공무원 현원은 1,880명, 3년 이상 공무원 현원 1,486명으로, 6개월 이상으로 대부 자격요건 완화 시 대부 신청대상 인원이 394명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수준과 높은 초기 정착 비용(전세 자금, 이사 비용, 교육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바, 해당 개정안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무 의욕을 상승시키고, 청년 공무원 조기 퇴직율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강남구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기금이 신규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이 구민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질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 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①「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생활안정기금담당팀장

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 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538

제안연월일: 2025. 6. 11.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홀수로 정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효율을 도모하며,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생활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 수정(안 제4조제2호)
- 나. 위원회 구성 인원과 연임 규정에 관한 조문 수정(안 제7조)
- 다. 조문의 제목을 위원회 운영으로 수정함(제10조)
- 라. 대부금 일시상환에 관한 조문 수정(안 제1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특히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생 략)</p> <p>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u>특히 필요하다</u>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기금의 용도) ----- ----- ----.</p> <p>1. (원안과 같음)</p> <p>2. ----- ----- <u>필요하</u> <u>다</u>고 -----</p>
<p>제7조(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u>12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 다.</p> <p>③ (생 략)</p>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고, <u>한 차례에 한정하여</u>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 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 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안 과 같음)</p> <p>② ----- -- <u>13명</u> ----- ----- --.</p> <p>③ (원안과 같음)</p> <p>④ ----- ----- <u>한 차례만</u> ----- ----- -----.</p>
<p>제10조(<u>운영</u>) ① ~ ④ (생 략)</p>	<p>제10조(<u>위원회 운영</u>) ① ~ ④ (원 안과 같음)</p>
<p>제14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p>	<p>제14조(대부금 일시상환) -----</p>

<p>호의 <u>경우</u>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 <u>어느 하나에</u> 해당되는 경 우 -----.</p> <p>1. ~ 3. (원안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용자대상자의 선정
5. 용자금액의 결정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각 국 및 보건소 주무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
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대부 신청자격 등) ①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 소속(구본
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고, 대부금
에 대한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제14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미상
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는 경우
2. 대부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5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구금고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직접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점검등)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게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8
----------	-----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총무과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대부 신청자격 완화(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를 통해 신규 공무원 또한 대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 생활 안정 및 기금 관리·운용에 공공성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7조)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추가

- 나.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함(안 제10조)
-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다. 대부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신규 공무원 또한 생활안정기금 대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증진함(안 제12조)
-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
- 라. 단순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
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기금전출금 7억원)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기금 내부거래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5. ~ 2025. 5. 1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따른 기금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2. 그 밖에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하고,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용자대상자의 선정
5. 용자금액의 결정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각 국 및 보건소 주무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
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대부 신청자격 등) ① 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 소속(구본
청, 보건소, 구의회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②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하고, 대부금
에 대한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제14조(대부금 일시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는 경우
2. 대부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제15조(대부업무 위탁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구금고가 있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직접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점검등)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에게 자금운용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안정기금 용자금 추가 조성
2. 비용추계의 전제 : 일반용자 및 전세자금 용자 등 지원대상 35명 추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세입	-	-	-	-	-	-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일반용자 (1,000만원)	100,000	-	-	-	-	100,000
	○ 일반용자 (2,000만원)	300,000	-	-	-	-	300,000
	○ 전세자금 등 (3,000만원)	300,000	-	-	-	-	300,000
	소계(b)	700,000	-	-	-	-	700,000
□ 총 비용(a-b)		700,000	-	-	-	-	7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700,000	-	-	-	-	7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700,000	-	-	-	-	7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용자금회수, 예치금을 활용하여 기금 지속 운용
6. 작성자 : 총무과 행정6급 서정민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일반용자(일천만원) : 10,000,000원 × 10명 = 100,000,000원
2. 일반용자(이천만원) : 20,000,000원 × 15명 = 300,000,000원
3. 세자녀, 주택 전세 및 구매 자금, 결혼자금(삼천만원)
= 30,000,000원 × 10명 = 300,000,000원